

□ 사업개요

☞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란 ?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산재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인력 (경기도 사업)

* 유사사업 현황 : 서울시 안전어사대, 부산시 안전보건지킴이,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안전지킴이 등

1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3. 1월)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활동 필요
 - '22년 전국 산재 사망사고 876명 중 경기도는 256명으로 전국 최다(29.2%)
-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강화와 산재 사망사고 감축 필요

2 사업목적

-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지도,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계도
- 떨어짐, 무너짐, 끼임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불량현장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즉시 개선토록 조치
- 도·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

3 지원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자체 책무), 제4조의3(지자체 산재예방활동)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9조(산재예방 사업)

4

추진경과

- ('20.3월) 건설안전 분야 경력자(산업안전기사 10명)를 선발, 2인 1조로 도내 5개 권역(10개시) 집중점검 활동 실시
- ('20.7월) 경기도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 표준(안)'에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출입 및 협조사항' 반영
- ('21년~) 31개 시·군으로 확대(104명 선발), 교육 및 현장점검 실시

5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3. ~ 12. (약 9개월)
- 사업내용 : 노동안전지킴이 채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활동
⇒ 건설현장 및 제조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용인·이천·광주(물류창고·센터), 양주·김포·평택(제조업) 등 지역별 특정 위험업종 점검
- 사업목표 : 현장점검 40,000회(건설업 60% 이내, 1팀당 1일 4-5건/월 86건/연 770건), 워크숍 3회, 합동 현장점검 2회(4월, 7월), 합동 홍보캠페인 3회

□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1 활동근거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지자체 책무), 제4조의3(지자체 산재예방 활동 등)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②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법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④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 허가조건 표준안」 마련(20.7.30)

1. 일반사항

3. 건축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점검(수시, 불시 포함)시 점검자(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포함)의 현장출입, 관련자료 제공, 현장 안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시·군 관내 산업단지 등 사업장(공장) 방문 시 협조 공문 발송(20.12.4)

제목 : 신규사업장(공장) 및 산업단지 산업재해 예방 안내 등 협조 요청

내용 : 경기도 산업정책과-6285(20.6.22.)호와 관련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 밀집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협조 요청

- ‘노동안전지킴이’ 관내 산업단지 등 사업장(공장) 방문 시 협조

○ 관내 현장방문 시 협조 공문 발송(21.4.6)

제목 :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안전점검 활동 협조 요청

내용 : 경기도는 건설 및 제조업 현장의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을 추진 중임. 노동안전지킴이 출입 및 안전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 요청

○ 시·군 인허가 부서의 민간건설공사 현황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21.5.3)

제목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군 관련부서 적극협조 조치요청

내용 : 시·군 종합평가 도정주요시책지표에 따른 진행 중인 민간건설공사 현황파악을 위해 인·허가 부서의 절대적 협조가 요구됨

평가에 따른 증빙자료는 인허가 부서에서 지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명확치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협조 요청

2

활동내용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현황조사 및 활동계획서 작성(주간, 월간) ◦ 현장점검 시 준수사항 준수(보호구 착용, 신분증 제시 등) ※ 반드시 점검자 본인의 안전 확보 후 사업장 점검 실시 ◦ 안전조치 사항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점검 후 안전조치 미비 현장에 대해 n차 반복점검 ◦ 도의 합동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요청 시 현장점검 실시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후 현장점검표 작성 ◦ 현장관계자에게 설명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취지와 점검결과(위험요인,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 - 사전에 준비한 안전기술자료(포스터, 스티커 등) 배부 ◦ 불량현장 유관기관(안전보건공단, 노동지청)으로 연계 ◦ 현장점검 이력관리 스티커 부착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표, 점검실적 관리대장 작성 및 보고(매일)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조치 사항 모니터링

3

점검 대상

- 중점 점검대상은 건설업, 제조업 및 물류시설 운영업으로 함
 - 건설업 : 60억 미만 민간공사 (산안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 (참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공사금액 60억~80억미만(’22.7월~), 50억~60억미만(’23.7월~)
 - 제조·물류시설 등 :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지역별 밀집산업* 등에 따라 선정
* 예시 : 용인·이천·광주(물류시설), 양주·김포(외국인고용 소규모제조업)
-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중점 점검대상을 우선으로 하되, 중점 점검대상(중규모 이상, 배부된 건설현장 목록 외 현장 등)에 해당하지 않은 안전불량 현장도 점검 가능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산안법 시행령 “별표3”참고)

- 현장점검 4~5개소/일 이상 (이행여부 점검포함)
 - 안전조치 미흡 현장에 대해 개선조치 사항 사후 모니터링
- 유관기관에서 협조공문 발송 등으로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을 적극 지원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시군 → 도) 및 모니터링
 - 1) 사고개요 등 상황 파악(사진 첨부) 2) 과거 점검이력 등 확인 후 보고
 - 3) 현장수습 상황 모니터링 4) 위험작업장으로 분류, 사후 모니터링(현장점검) 실시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경기도

수신 관내 사업소장(관리자)

(경유)

제목 '23년 「경기도 노동안전 지킴이」 안전점검 활동 협조요청

1. 평소 산업재해 예방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 제조업, 폐기물재활용업, 재활용수거업, 광공업, 서비스업, 산업단지, 공단, 소공인집적지구 등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경기도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사업을 '21년부터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사업 현장에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안전점검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계도와 지도로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현장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함이니 안전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의 지원을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끝.

경기도



지사인

주무관 김영철 산업재해예방 팀장 김승희 중대산업재해 대책 2023. 3. 27. 노동안전과장 전길 대응팀장 황종일

협조자

시행 노동안전과-2753 (2023. 3. 27.) 접수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창사로 1 (신곡동)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30-4553 팩스번호 031-8008-8499 / yckima@gg.go.kr / 대국민 공개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